

의안번호	2215942
의 퇴 인	임종득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7.
추계번호	26C0092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2조의4 (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지원 및 안전확인 등) 제1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2조의4 (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지원 및 안전확인 등) 제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화, 방문 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~2	안 제12조의4 (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지원 및 안전확인 등) 제1항·제2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확대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현재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로 배회감지기를 대여받을 수 있으며, 일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위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¹⁾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할 장치 등의 규모와 장치의 단가, 정기 안전 확인의 방법 등을 알 수 없음
 - 안 제12조의4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공될 장치의 유형을 확정하기 어려움²⁾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

1) 치매안심센터의 기기 보급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인 '행복GPS'를 활용
 2) 참고로, 신체에 착용하거나 소지품에 부착할 수 있는 GPS형과 수급자의 거주지에 설치하는 매트형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